사내벤처 운영규칙

제정 2019.12.23. 개정 2020.12.29. 개정 2021.10.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내벤처 제도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내벤처를 지원하고 육성 및 관리하는 제반 사항은 법령, 진흥원의 정관, 사규 및 이사회 의결로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내벤처활동"이란 직원이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아이템 사업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경영관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2. "사내벤처팀"이란 진흥원의 직원이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사업성, 기술성, 비즈 니스 모델 등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 3. "전담조직"이란 사내벤처팀의 선정 및 행정지원, 타부서와 업무연계 등 사내벤처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말한다.
- 4. "평가위원회"란 사내벤처 지원대상 추천, 사업평가,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 5. "심의위원회"란 사내벤처 지원대상 최종결정, 최종평가결과 심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내벤처팀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6. "사업평가"이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기술구현 및 콘셉트, 시장성·사업성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 7. 삭제 <2020.12.29.>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전담조직의 역할)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내벤처 사업계획서 공모 및 접수
- 2.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위원회 개최·운영 <개정 2020.12.29.>
- 3. 삭제 <2020.12.29.>
- 4. 삭제 <2020.12.29.>
- 5. 사내벤처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사내벤처 홍보 및 활성화 유도

- 7. 기타 사내벤처창업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제5조(사내벤처팀 이행사항) 사내벤처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에 명시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사업목표의 달성 등)
- 2. 관련 법률, 공고, 규정의 숙지와 준수
- 3.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내벤처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참여
- 4.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이행
- **제6조(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은 사내벤처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경제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내벤처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내·외부 평가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혁신경영단장, 간사는 사내벤처 전담조직의 장으로 하고 내·외부 평가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사내벤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1. 사내벤처팀의 추천, 사업평가 <개정 2020.12.29.>
 - 2. 삭제 <2020.12.29.>
 - 3.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 ④ 제3항제1호의 사내벤처의 추천을 위해 별표1의 양식으로 평가하고 그 외 점검 및 평가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진흥원은 평가위원회 및 현장 확인 등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수수료지급지침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 ① 진흥원은 사내벤처제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내벤처팀의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의위원회는 각 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관경영 관련 본부장, 간사는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사내벤처 공모·운영 계획
 - 나. 사내벤처팀 선정 및 취소
 - 다. 사내벤처팀의 협약체결, 연장, 독립분사, 종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9.>
 - 라. 삭제 <2020.12.29.>
 - 마. 사내벤처팀의 이의제기에 따른 평가결과 확정
 - 바. 삭제 <2020.12.29.>
 - 사. 기타 사내벤처와 관련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다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신청 및 평가

- 제8조(사내벤처 운영 분야) ①사내벤처를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흥원의 기존 사업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 2. 신사업 분야로서 진흥원의 전략 목표와 부합하고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3. 그 외 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사내벤처 운영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1. 국내·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 2. 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 등에 반하는 분야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분야
- 제9조(신청자격) ① 신청자격은 진흥원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내벤처를 신청할 수 없다.
 - 1.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규정 제37조의3(징계처분기록의 말소)에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사내벤처 선정취소 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부패 행위자
 - ②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해당 공고에 따른다.
- **제10조(모집공고)** ① 사내벤처 관련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는 별도 공고에 따르며, 횟수 및 시기는 진흥원의 운영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②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4. 사내벤처팀의 의무 및 역할
 - 5. 신청절차, 방법 및 신청기간
 - 6.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
 - 7. 유의사항
 - 8.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11조(사내벤처팀 선정) ① 전담조직은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사내벤처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별지1-1호 내지 1-2호 서식에 해당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충족요건 등을 검토한 후, 서면 및 발표평가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1.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 2.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혁신성
 - 3.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제시
 - 4. 일자리 창출 등 벤처창업 기대효과

- 5. 도전의지, 기업가 정신, 팀원 구성의 적절성 등
- ③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균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평가과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내벤처팀을 최종 선정한다.
- **제12조(협약)** ① 진흥원과 사내벤처팀은 벤처창업활동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내벤처팀은 세부 실행계획서 및 협약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협약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결과 '독립분사', '종료'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협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 제13조(선정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벤처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7.>
 - 1. 제출한 관련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2. 진흥원과 협의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 3. 진흥원에서 지원한 자금, 시설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5.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내벤처팀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7.>
- ③ 협약 이후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약은 자연적으로 해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7.>
 - ④ 진흥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내벤처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10.27.>

제4장 운영 및 관리

- **제14조(사내벤처팀 운영)** ① 진흥원은 사내벤처팀으로 선정된 구성원을 전담조직으로 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사내벤처팀 선정 후, 협약기간 내에 사무공간, 부대시설 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전담조직은 사내벤처팀의 필요에 따라 강사초빙, 외부위탁교육 등 창업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사내벤처팀의 복무, 근로조건, 임금,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제규정을 따른다. 다만,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⑤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개인성과평가는 성과평가편람에 따른다.
 - ⑥ 진흥원은 협약기간 중에는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을 전보하지 않는다.
- 제15조(정기보고) ① 사내벤처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담조직의 장에게 정기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 진행현황에 대한 사항

- 2.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사항
- 3.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보고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0.12.29.>
- 1. 월간보고 : 다음달 7일까지
- 2. 분기보고 : 사업평가를 위한 과제수행 보고서
- 3. 수시보고 : 전담부서 요구시
- ③ 전담조직은 사내벤처에 대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다.
- 제16조(경영·기술 지원) ① 전담조직은 사내벤처팀의 행정적, 재무적 업무에 대하여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사내벤처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 관련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사내벤처팀이 회사의 보유기술 등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기술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 사용에 따른 기술이전 수수료는 기술이전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진흥원은 사내벤처팀의 기타 경영 및 기술자문 요청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평가) ① 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내벤처팀의 과제수행 경과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② 평가위원은 과제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필요시 내부 임직원 및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구현, 콘셉트, 시장성·사업성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29.>
 - 1. 시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물
 - 2. 사업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 여부
 - 3.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 현황 등 성과
 - 4.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④ 진흥원은 사내벤처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0.12.29.>
 - ⑤ 평가결과는 '계속추진', '독립분사', '종료'로 한다. <개정 2020.12.29.>
- 제18조(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① 진흥원은 사업평가 결과가 '독립분사' 또는 '종료'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1. 사내벤처가 독립분사하는 경우,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또는 3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한다.
 - 2. '종료'의 경우,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의 내부 상황 등으로 원소속 복귀가 어려운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서로 발령 조치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제5장 기타사항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의무) ①사내벤처팀 및 분사기업의 전·현직 구성원은 재직 및 창업 시 취득한 정보를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사항을 위한하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 칙<2019. 12. 23.>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7>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계획 평가표

사내벤처명

77 O 71	조 이 교기 원이지원	교기되스
평가 요건	주요 평가 착안사항	평가점수
사업을 위한 준비성 (20점)	o 사업 목표의 명확성 (5)	
	o 사업계획의 구체성 (5)	
	o 사업적정성 및 진흥원 업무와 관련성 (10)	
사업계획의 전문성 또는 기술성 (20점)	o 사업추진의 시급성 (6)	
	o 사업계획의 혁신성 (7)	
	o 제품 또는 기술구현 실현가능성 (7)	
사업계획의 사업성 (20점)	o 사업추진의 필요성 (6)	
	o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7)	
	o 사업의 성장 가능성 (7)	
고용창출 역량 (20점)	o 기술선점, 해외진출 가능성 (6)	
	o 진흥원의 이미지 제고효과 (7)	
	o 예상 일자리 창출 기여도 (7)	
구성원의 역량 및 능력 (20점)	o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 보유여부 (6)	
	o 사업에 대한 도전의지, 기업가 정신 (7)	
	o 리더 조직관리 능력, 팀원구성의 적절성 (7)	
평가결과	총 점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평기의의 스 소·	

소 속: 직 위: 평가위원

직 위 :

(인) 성 명 :

						접수병	번 호					
사내벤처 신청서												
	성명		소속		직급		내선					
신청인 (2인이상~4인이내)												
사업내역	사업명											
	사업유형	(연구/기술, 서비스/시스템, 경영시스템 개선 등)										
	기술유형	(공사보유기술, 자기보유기술, 연구개발결과물, 아이디어 사업 등)										
	주요내용											
위와 같이 사내벤처 운영규칙 제 10조에 따라 사내벤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성명	년	월	일 (인)		
첨부서류 1. 사업추진계획서 2. 사용기술 내역서												

사업추진 계획서

- 1. 사업개요
 - 목적 및 사업추진 동기, 준비사항, 진흥원 업무와 관련성, 구성원의 주요 경력 등
- 2. 사업계획서 요약 : 사업내용, 사업추진 의지 등
- 3. 비전 : 향후 기대되는 사업의 주요내용 (영업활동, 매출액, 이익규모, 개선효과, 적용범위 등)을 간략히 기술
- 4. 제품(서비스) 및 기술 혁신 등 설명 :
 - 제품(서비스) 및 기술 개발의 시급성
 - 제품(서비스) 및 기술 혁신성
 - 제품(서비스) 및 기술 구현 가능성 등
- 5. 상황분석 : 제품(서비스) 시장 분석(시장규모, 발전방향 등), 경쟁상황 분석(경쟁업체 분석, 예상 시장점유율 등) 및 체질 혁신 필요 등
- 6. 마케팅전략 및 판매계획 : 마케팅 전략과 목표시장에 판매할 계획
- 7. 주요 문제점 및 발생가능 위험 :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예상되는 위험 및 이에 대한 대책
- 8. 재무계획 : 수익성 분석(미래 재무상황 및 성과예측 등) 및 추정 재무제표 작성
- 9. 기대효과 :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진흥원의 이미지 제고, 기술선점 및 해외진출 등
- 10.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
- 11. 기타 서류 : 그림, 사진, 도표 등 사업추진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
- 12. 진흥원 지원 요청사항: 기술사용(특허 등), 경영·기술 자문 및 기타 지원사항 등
- 13. 참고사항
 - 가. 각 항목별 내용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 나. 사업추진계획서 상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 다. 계획사항은 3개년 이상으로 작성
 - 라. 사업추진계획 요약서(3페이지 이내) 작성

사용기술 내역서

- 1. 사용기술명 :
- 2. 사용기술의 적합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
- 3. 국내외 관련 기술과의 비교
- 4. 기술사용으로 인한 진흥원 업무와의 관련성 등

사내벤처 업무협약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와 사내벤처 리더 OOO(이하 '리더'라 한다.)는 진흥원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통한 진흥원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내벤처 제도 도입·운영을 통해 사내 혁신·벤처문화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진흥원의 경영성과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진흥원과 리더는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사업화 및 체질혁신 등을 이끌어낸다는 사내 벤처의 도입취지를 인식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서 적극 협력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가지로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진흥원과 리더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성실 이행) 진흥원과 리더는 사내벤처 운영규칙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리더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진흥원과 리더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내벤처

원장 (인) 리더 (인)